

현물보상 기준 및 현물보상 신청 공고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03

현물보상 절차 및 일정

04

유의사항

05

I. 사업 개요

06

II. 현물보상 공급계획

08

III. 현물보상 대상자

10

IV. 현물보상 공급기준

13

V. 신청 및 대상자 선정

16

VI. 유의사항

18

양식

30

붙임. 현물보상 대상 건축물 세부내역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기준 및 현물보상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80호(2024.12.30.)로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건축물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아래 보상기준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현물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대상자 심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	일정
현물보상 기준 공고	- 현물보상 기준 안내	‘26.07.27.(월)
현물보상 신청 (주택)	- 현물보상 신청 (토지등소유자 → LH)	‘26.08.18.(화) ~ ‘26.09.18.(금)
대상자 확정 (주택)	- 현물보상대상자 확정통보 (LH → 토지등소유자)	‘26.10.06.(화)
현물보상 신청 (주택 외 건축물, 토지)	- 현물보상 신청 (토지등소유자→LH)	‘26.10.07.(수) ~ ‘26.10.14.(수)
대상자 확정 (주택 외 건축물, 토지)	- 현물보상대상자 확정통보 (LH→토지등소유자)	‘26.10.19.(월)
현물보상계약	- 현물보상 계약체결 (LH↔토지등소유자)	‘26.10월말 예정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현물보상**이란 도심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사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복합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포함) 또는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물보상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1년 6월 29일**(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13호)이며,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문 **(표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물보상 대상자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III. 현물보상 대상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선납가능액**이란 기준일 이전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총액으로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 및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 **현물선납액**이란 현물선납가능액에서 현금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현물로 보상받기 위해 지급을 유보하는 금액입니다. 토지등 소유자별 보상금 총액, 현물선납가능액, 현금등보상액은 주민 개별 통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물보상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현물보상 신청기간 (주택 : '26.08.18.~'26.09.18. / 주택외(상가, 토지) : '26.10.07.~'26.10.14)**내에 현물보상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현물보상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현물보상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보상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추후 최종 설계안 확정 및 현물보상 분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 여건, 시공 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본 현물보상 신청은 **주택형(예 : 84형, 59형 등) 기준으로만 접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설계안이 확정되면 해당 주택 평형 내 선정자를 대상으로 세부 타입(예 : 84A, 84B 등)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신청 일정 및 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 외 건축물)** 본 현물보상 신청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최종 설계안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현물보상 대상자 확정을 위해 현물보상 대상 여부 및 경합시 우선순위를 통보하고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96,762,000원**)을 유보합니다. 최종 설계안 확정 시 선순위자부터 분양받을 동·층 및 호를 신청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신청 일정 및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토지)** 본 현물보상 신청은 토지이용계획 최종 안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현물보상 대상자 확정을 위해 현물보상 대상 여부 및 경합시 우선순위를 통보하고,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3,701,500,000원**)을 유보합니다. 최종 토지이용계획안 확정 시 신청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선순위에서 토지분양이 완료된 경우 후순위 신청자에 대한 토지분양 또는 현물주택 또는 상가로의 변경신청은 불가합니다.
- **현물주택 분양가격**은 주택형에 따른 추정 분양가격으로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사업비 변동 및 동·호수 추첨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공급계약 시점에 결정된 공급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공급계약 시점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전매(매매,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공사는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제곱미터(m²)→평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향후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보상 요건 및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사업명칭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		
복합사업참여자	포스코이앤씨		
사업면적	60,704㎡	건축면적/연면적	12,655.12㎡ / 220,582.45㎡
주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1,332세대
건폐율	27.40%	용적률	299.71%
층수	지상45층, 지하2층	주차계획대수	1,866대(근생 26대 포함)

2. 주택 공급계획

(단위 : 호)

주택형	총 세대수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공공임대
36	110	1	33	76
59	675	375	234	66
64	19	6	-	13
84	422	417	-	5
114	98	98	-	-
143	1	1	-	-
144	1	1	-	-
160	4	4	-	-
164	2	2	-	-
합계	1,332	905	267	160

* 평형, 전용면적, 공급호수, 공급유형 등은 추후 최종 설계안 확정 및 현물보상 분양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공급계획

(단위 : 호)

구분	층	호수	비고
101동 근린생활시설	1층	12	
	2층	10	
111동 근린생활시설	B2층	12	실 지상 1층
	B1층	15	실 지상 2층
합계		49	

* 평형, 전용면적, 공급호수, 공급유형 등은 추후 최종 설계안 확정 및 현물보상 분양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토지(종교용지) 공급계획

구분	위치	면적
종교용지 1	신길동 202-23번지 일대	832㎡
종교용지 2	신길동 201-47번지 일대	444㎡
합계		1,276㎡

* 위치, 면적 등은 추후 최종 토지이용계획안 확정 및 현물보상 분양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현물보상 공급계획

1. 주택 규모별 공급 세대 및 추정 현물보상가격

* □ 최소 전용면적 분양가격
(주택형별 A타입 기준. 단위: m, 호, 천원)

주택형	전용면적	권리자 공공분양		권리자 이익공유형 공공분양				
		세대수	현물보상가격	세대수	현물보상가격			
					50%기준	60%기준	70%기준	80%기준
36	36.66	1	449,692	33	224,846	269,816	314,785	359,754
59	59.94	375	892,347	234	446,174	535,409	624,643	713,878
64	64.89	6	966,211	-	-			
84	84.94	417	1,072,341	-	-			
114	114.92	98	1,124,521	-	-			
143	143.94	1	1,565,418	-	-			
144	144.93	1	1,598,251					
160	160.95	4	1,730,168	-	-			
164	164.90	2	1,752,447					
합계	-	905	-	267	-			

* 상기 가격은 추정 현물보상가격으로, 최종 현물보상가격은 추후 최종 분양가 심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외 건축물(상가) 상세 내역 및 추정 현물보상가격

* □ 상가 최소분양가격 (단위 : 천원)

동	층	호	전용면적(m)	현물보상가격
101동 근린생활시설	1층	101호	42.82	350,690
		102호	36.12	287,877
		103호	35.63	283,972
		104호	27.37	218,139
		105호	30.00	239,100
		106호	32.62	259,982
		107호	30.12	246,679
		108호	28.46	233,084
		109호	29.17	232,485
		110호	26.26	215,066
		111호	23.49	183,342
		112호	63.27	417,321
	2층	201호	42.62	192,096
		202호	25.57	112,438
		203호	35.63	156,674
		204호	64.63	262,880
		205호	66.53	270,608
		206호	27.62	124,489
		207호	29.11	131,204
		208호	26.26	112,585
		209호	23.49	100,709
		210호	63.27	243,437

동	층	호	전용면적(m)	현물보상가격
111동 근린생활시설	B2층 (실 지상1층)	101호	28.71	252,490
		102호	28.71	252,490
		103호	26.93	244,237
		104호	30.01	263,923
		105호	28.20	248,005
		106호	28.20	248,005
		107호	28.20	248,005
		108호	28.20	248,005
		109호	28.20	248,005
		110호	29.25	265,278
		111호	47.88	434,239
		112호	48.25	400,465
	B1층 (실 지상2층)	201호	48.18	217,156
		202호	46.31	208,728
		203호	21.70	107,348
		204호	30.03	148,556
		205호	25.16	124,464
		206호	30.20	149,397
		207호	25.16	124,464
		208호	30.20	149,397
		209호	19.56	96,762
		210호	20.29	100,373
		211호	50.98	252,193
		212호	51.37	234,357
		213호	44.54	203,198
		214호	46.40	211,684
		215호	46.53	212,277

* 상기 가격 및 동·층·호, 전용면적 등은 추후 최종 설계안 확정 및 최종 분양가 심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토지(종교용지) 추정 현물보상가격

(단위 : 천원)

필지 구분	면적(m)	면적당 단가(천원/m)	현물보상가격
종교용지 1	832	8,336	6,935,914
종교용지 2	444	8,336	3,701,500

III 현물보상 대상자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 2021년 6월 29일

1. 현물보상 대상자 요건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 제5항에 따라,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중 ①~② 또는 ②~③의 요건을 갖춘 자는 현물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자
- 2 협의보상에 응하여 토지등 전부를 양도하는 자
- 3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자(표1)

표1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2021.6.29.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2021.12.31.)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
2.	2021.6.29.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2021.6.29.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2021.6.29. 이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2021.12.31.)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소유한 자
3.	2021.6.29.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

1. 2021.2.4.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2021.4.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2021.12.31.)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2025.8.1.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1) 공공분양주택 현물보상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주택으로 현물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현물보상 대상자 요건을 갖춘 자
- ②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 1) 건축물 중 주택소유자('89.1.24. 당시 무허가건축등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포함)
 - 2) 소유하는 토지 총 면적이 90㎡ 이상인 자
 - 3) 현물선납가능액*이 449,692,000원(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 분양가격) 이상인 자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현물보상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주택으로 현물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보상계획공고일('24.7.31.) 당시 무주택자 또는 복합지구 내 주택만 1주택 보유한 자
- ② 현물보상 대상자 요건을 갖춘 자

- ③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 1) 건축물 중 주택소유자('89.1.24. 당시 무허가건축등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포함)
 - 2) 소유하는 토지 총 면적이 90㎡ 이상인 자
 - 3) 현물선납가능액*이 224,836,000원(이익공유형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 분양가격) 이상인 자

※ 현물보상 다가구주택 특례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현물보상대상자로 본다.

- ①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하는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일 것
- ②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가구별로 주방, 화장실, 침실 등의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 ③ 서울은 1997.1.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했을 것

2. 제1항의 다가구주택에는 1990.4.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3) 주택 외 건축물(상가) 현물보상 대상자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는 주택 외 건축물(상가)로 현물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종교용지) 현물보상 대상자

복합지구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 등 전부를 양도하고, 후보지 선정일 (2021. 6.29.)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해 온 자는 토지(종교용지)로 현물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
-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IV 현물보상 공급기준

1. 주택 현물보상 공급기준

주택 현물보상 대상자에게 아래의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가 동일세대(표2)에 속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을 1명으로 봅니다.

표2	동일세대 판단기준
----	-----------

- “세대”는 토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아래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가족”이란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 포함
 2. 동일세대 여부는 서울 신길2 복합사업지구 지정고시일(‘21.12.31.) 기준으로 판단
 3.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며, 다만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포함
 4. 동일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지구지정(‘21.12.31.)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판단(단, 이혼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제외)

1) 1주택 공급 기준

- ①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 양도한 경우
- ② 여럿이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 양도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 양도한 공유자가 같은 경우 그 여럿에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토지를 협의 양도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가 90㎡ 이상인 공유자에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하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공유자에게는 주택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여럿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협의 양도하였고, 여럿 중 일부가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는 등 단독으로 주택 현물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게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지분권자(현물보상 기준 면적 90㎡ 미만소유자)에게는 주택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기준일 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현물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의 건축물로 보상합니다.
- ⑤ 기준일 이후 이혼을 원인으로 현물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혼 및 그로 인한 재산 분할 후 양자 모두 현물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게 하나의 건축물로 보상합니다.

2) 2주택(1+1) 공급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1+1)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급받는 두 주택의 분양가격 합계가 보상금 총액 이하인 경우
 - ② 공급받는 두 주택의 전용면적(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면적 기준)의 합계가 기존 협의양도한 주택의 전용면적 이하인 경우
- ※ 단, 두 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하며, 이익공유형 주택은 1+1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기준

- ① 주택 현물보상자 대상자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② 보상계획 공고일(‘24. 8. 2.)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해당 복합지구 내의 주택으로 한정한다)만 소유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급가격	현물보상 공급 분양가격에 50%, 60%, 70%, 80% 중 협의로 결정
공급조건	환매조건(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신청)
의무거주기간	해당 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
처분 손익 공유 기준	환매시 처분 손익 공유는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환매가격을 주택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 • 추가금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환매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주택의 공급가격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 • 거주무기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입주가능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추가금액을 납부한 경우 - 환매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 + (추가 납부금액 / 납부시점의 해당주택의 감정평가액)]

4) 공급 경합 시 결정기준

동일한 주택 규모의 공급에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표3) 각 호의 순서를 기준으로 공급받을 자를 결정하며, 주택의 동 층 및 호의 결정은 향후 주택착공 이후 현물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현물분양공고에 따라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표3	주택 현물보상대상자 공급 경합시 결정기준 (적용순서 1→2→3)
----	-------------------------------------

1. 보상금 총액*이 많은 자
(단, 주택 두 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주택 공급 신청 시 첫 번째 공급신청 한 주택의 가격은 제외함)
2. 현물선납액이 많은 자
3. 추첨
* 보상금 총액이란 최초 손실보상 협의 요청 시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액으로, 기준일 이후 취득 등의 사유로 현금 등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포함함



2. 주택 외 건축물(근린생활시설) 공급기준

1) 공급 기준

- ① 상가는 아래 (표4)에 따른 선순위자부터 신청받아 공급하며, 현물선납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2호를 초과하여 상가를 공급받거나 주택과 상가를 혼합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여럿이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경우 그 여럿에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상가로 보상하며,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공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상가로 보상합니다.

표4	주택 외 건축물 현물보상 공급순위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현물선납가능액(단,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는 경우 그 주택의 가격 제외)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96,762,000원)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현물선납가능액(단,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는 경우 그 주택의 가격 제외)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96,762,000원)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현물선납가능액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96,762,000원)에 미달 되나 주택을 현물보상 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현물선납가능액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96,762,000원)에 미달되나 주택을 현물보상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받지 않은 자로서 현물선납가능액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96,762,000원) 이상인 자
6. 제6순위	: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은 자로서 현물선납가능액(단,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는 경우 그 주택의 가격 제외)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96,762,000원) 이상인 자

2) 공급 경합 시 결정기준

동일 순위 내에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표5) 각 호의 순서를 기준으로 공급받을 자를 결정합니다.

표5	상가 현물보상대상자 공급 경합 시 결정기준 (적용순서 1→2→3)
1. 보상금 총액*(주택으로 현물보상 받는 경우 그 주택의 분양가격 제외)이 많은 자	
2. 현물선납액이 많은 자	
3. 추첨	* 보상금 총액이란 최초 손실보상 협의 요청 시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액으로, 기준일 이후 취득 등의 사유로 현금 등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포함함

3. 토지(종교용지) 공급기준

1) 공급 기준

- ① 토지는 아래 (표6)에 따른 선순위자부터 신청받아 공급하며, 토지로 현물보상을 받는 자는 건축물과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시설 외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② 여럿이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경우 그 여럿에게 하나의 토지로 보상하며,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공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토지로 보상합니다.

표6	토지 현물보상 공급순위
1. 제1순위	: 기준일(2021.6.29.)이전부터 현물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시설의 토지와 적법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2. 제2순위	: 기준일(2021.6.29.)이전부터 현물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시설의 적법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3. 제3순위	: 기준일(2021.6.29.)이전부터 현물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시설(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 집회장은 제외)의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2) 공급 경합 시 결정기준

동일 순위 내에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표7) 각 호의 순서를 기준으로 공급받을 자를 결정합니다.

표7	토지 현물보상대상자 공급 경합 시 결정기준 (적용순서 1→2→3)
1. 보상금 총액*(주택으로 현물보상 받는 경우 그 주택의 분양가격 제외)이 많은 자	
2. 현물선납액이 많은 자	
3. 추첨	* 보상금 총액이란 최초 손실보상 협의 요청 시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액으로, 기준일 이후 취득 등의 사유로 현금 등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포함함

V 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신청접수

- 1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제출된 신청서류는 접수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신청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신청기간 (주말, 공휴일 제외)	'26.08.18.(화) ~ 09.18.(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26.10.07.(수) ~ 10.14.(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4-3, 1층 현물보상 접수센터	
	우편접수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4-3, 1층 현물보상 접수센터 ※ 주택 : '26.9.18(금) / 주택외 건축물 : '26.10.14(수) 소인분까지 유효	
문의처	02-373-8997 ('26.9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3. 신청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현물보상 기준 공고일(‘26.07.27.) 이후 발급 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신청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신청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신청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물보상 신청 접수가 거부됨	1통
현물보상신청서	• 대상자 : 현물보상(주택 또는 주택외건축물) 신청 희망자	1통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 포함)	• 부동산 구분 : 토지, 건물, 집합건물 • 지구 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체	1통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중 해당 서류로 발급 • 지구 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체	1통
무허가건물과세대장	• 대상자 :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공개	1통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방식인 경우 • 반드시 본인 직접 발급받은 서류 • 공동소유자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인 각각의 서류 필요	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방식인 경우 • 반드시 본인 직접 발급받은 서류 • 공동소유자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인 각각의 서류 필요	1통

■ 구비서류 (대상자만 제출)

구비서류	비고	부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자	1통
사업자등록증	• 대상자 : 상가 분양 신청자(공급순위 확인용)	1통
보증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제출용)	• 대상자 : 이주비대출 희망자	1통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안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 발급시 용도는 “현물보상 신청용”. 제출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발급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4. 신청 심사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현물보상 대상자 요건 및 공급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②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① 심사 결과 현물보상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②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③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VI 유의사항

1. 현금등 보상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준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등 현물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금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금 등으로 보상합니다.

2. 현금등보상으로의 전환

현물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래 (표8)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현물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 현금등보상으로의 전환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선납액에 대해서는 현물보상계약에 따른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자기산일)부터 실제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며(기 지급한 이자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표8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1. 현물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 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권리전매 제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 체결한 날까지 전매(매매,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공사는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 등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표9	전매제한 예외적 허용
----	-------------

1. 상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라. 주택도시보증공사

6)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7)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해당청 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현물보상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분양공고일의 5년 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다른 공공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한정)을 우선 공급 받은 토지등소유자나 해당하는 자의 세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는 본 사업지구의 주택 우선공급이 제한됩니다.

5. 양도소득세

현물로 보상받기 위해 공사에 유보하는 현물선납액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이연(비과세 아님)이 적용되나,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현금등으로 공급받는 금액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 세금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현금보상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계약을 취소하고 현금 등으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현물선납액에 대해서는 현물보상계약에 따른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자기산일)로부터 실제 현금지급일 전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7. 관계법령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026년 7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양식1) 주택 현물보상 신청 - 작성예시 ①단독신청하는 경우(1/2면)

		접수번호			
현물보상 신청서(주택)					
토지등 소재지 및 지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 번지			
구분	☒ 단독신청 ☐ 공동신청(공동소유자) ☐ 공동신청(동일세대) ※ 세대원이 별개의 물건 소유할 경우 동일세대에 체크, 세대원이 동일물건 공동소유시 공동소유자에 체크 ※ 배우자와 미혼인 19세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신청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1.01
	연락처	☎: 010-1234-5678			
공동 소유자/ 세대원 (공동 신청시 작성)	순번	성명	생년월일	지분	연락처
	1 (대표자)				
	2				
	3				
※ 공동신청인 각각의 ①현물선납명세 ②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4인이상 공동신청시 (양식3) 공동신청자 명단 별도 작성 ※ 공동소유자 전원이 신청서 서명 및 현물·현금청산 동의를 해야만 현물보상 대상자로 확정되며, 현금청산자 먼저 협의계약 이후 현물보상 계약가능					
신청 유형	☒ 공공분양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우선분양가의 ☐ 50% ☐ 60% ☐ 70% ☐ 80%)				
공공분양주택 신청한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신청한 경우		
추가 1주택 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신청인은 보상계획 공고일(2024.8.2.) 당시 무주택자 혹은 해당 복합지구 내 1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 (확인 시 네모상자에 체크) ※ 미충족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신청 불가 ※ 주택소유여부 검증을 위해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함께 제출		
추가 1주택 신청자격 (신청 시 체크)	① 현물선납가능액 ≥ 신축 2주택 분양가격 ☒ ② 종전 주택 전용면적 ≥ 신축 2주택 전용면적 ☐ ※ ① 또는 ② 해당시에만 추가 1주택 신청 가능 ※ 추가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주택형	공급호수	현물보상가격	희망순위	추가1주택 희망순위	
36	44	449,692,000	순위	2 순위	36 33 50 % 기준 224,846,000 (직접 작성) 2 순위
59	385	892,347,000	2 순위	1 순위	
64	10	966,211,000	순위		
84	360	1,072,341,000	1 순위		
114	98	1,124,521,000	순위		
143	1	1,565,418,000	순위	선택불가	59 234 50 % 기준 446,173,000 (직접 작성) 1 순위
144	1	1,598,251,000	순위		
160	4	1,730,168,000	순위		
164	2	1,752,447,000	순위		

(뒷면 계속)

(양식1) 주택 현물보상 신청 - 작성예시 ①단독신청하는 경우(2/2면)

현물선납 명세(주택)	
보상금 총액 (A)	(1,200,000,000 원)
현물선납 가능액 (B)	(1,200,000,000 원)
현물선납액(선납신청액) (B1)	(1,072,341,000 원)
현금보상액 (C=A-B1)	(127,659,000 원)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 (추가 1주택 신청시)	(150.50 ㎡)
※ 보상금 총액, 현물선납가능액 등은 개인별 종전자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신청규모 기준으로 작성하되, 1순위가 아닌 2·3순위 신청규모가 선정될 경우 새롭게 명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동신청시에는 각 공동소유자의 금액을 합한 현물선납 명세와 신청인 각각의 현물선납 명세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선납액(B1) : 현물선납가능액 중 실제 선납하는 금액 으로, 지급을 유보하는 금액 1) 현물선납가능액 ≤ 우선분양가 합계인 경우 : 현물선납가능액 전액을 선납 2) 현물선납가능액 > 우선분양가 합계인 경우 : 2-1) 동일 지번의 토지, 지장물을 보유한 경우 : 물건별 현물선납액은 현물선납 비율만큼 안분 2-2) 서로 다른 지번의 토지나 지장물을 보유한 경우 :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물건별 현물선납액은 현물선납 비율만큼 안분하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양식2) 물건별 현물 선납 명세를 작성하여 물건별 현물선납액을 작성	
< 유 의 사 항 >	
※ 주택 현물보상을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추후 '상가' 현물보상 신청시 현물선납 가능금액에서 '주택' 현물선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입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현물보상 대상자 선정취소 및 현물보상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작성 전 반드시 보상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물보상 신청 및 현물보상계약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은 추정가격 으로서, 추후 지반조사 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상계약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본인은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현물보상 받을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위 신청내역과 같이 현물로 보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7 월 27 일 신 청 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귀하	

(양식1) 주택 현물보상 신청 - 작성예시 ②공동소유자가 공동신청하는 경우(1/2면)

		접수번호							
현물보상 신청서(주택)									
토지등 소재지 및 지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 번지							
구분	☐ 단독신청 ☒ 공동신청(공동소유자) ☐ 공동신청(동일세대) ※ 세대원이 별개의 물건 소유할 경우 동일세대에 체크, 세대원이 동일물건 공동소유시 공동소유자에 체크 ※ 배우자와 미혼인 19세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신청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1.01				
	연락처	☎: 010-1234-5678							
공동 소유자/ 세대원 (공동 신청시 작성)	순번	성명	생년월일	지분	연락처	현물/현금	(서명 또는 인)		
	1 (대표자)	홍길동	60.01.01.	1/2	010-1234-5678	현물	홍길동		
	2	홍길순	60.01.02.	1/2	010-5678-1234	현물	홍길순		
	3								
※ 공동신청인 각각의 ①현물선납명세 ②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4인이상 공동신청시 (양식3) 공동신청자 명단 별도 작성 ※ 공동소유자 전원이 신청서 서명 및 현물·현금청산 동의를 해야만 현물보상 대상자로 확정되며, 현금청산자 먼저 협의계약 이후 현물보상 계약가능									
신청 유형	☒ 공공분양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우선분양가의 ☐ 50% ☐ 60% ☐ 70% ☐ 80%)								
공공분양주택 신청한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신청한 경우					
추가 1주택 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신청인은 보상계획 공고일(2024.8.2.) 당시 무주택자 혹은 해당 복합지구 내 1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 (확인 시 네모상자에 체크) ※ 미충족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신청 불가 ※ 주택소유여부 검증을 위해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함께 제출					
추가 1주택 신청자격 (신청 시 체크)	① 현물선납가능액 ≥ 신축 2주택 분양가격 ☒ ② 종전 주택 전용면적 ≥ 신축 2주택 전용면적 ☐ ※ ① 또는 ② 해당시에만 추가 1주택 신청 가능 ※ 추가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주택형	공급호수	현물보상가격	희망순위	추가1주택 희망순위	주택형	공급호수	현물보상가격	희망순위
	36	44	449,692,000	순위	2 순위	36	33	% 기준	순위
	59	385	892,347,000	2 순위	1 순위				
	64	10	966,211,000	순위					
	84	360	1,072,341,000	1 순위					
	114	98	1,124,521,000	순위					
	143	1	1,565,418,000	순위	선택불가	59	234	% 기준	순위
	144	1	1,598,251,000	순위					
160	4	1,730,168,000	순위						
164	2	1,752,447,000	순위						

(뒷면 계속)

(양식1) 주택 현물보상 신청 - 작성예시 ②공동소유자가 공동신청하는 경우(2/2면)

현물선납 명세(주택)	
보상금 총액 (A)	(1,200,000,000 원)
현물선납 가능액 (B)	(1,200,000,000 원)
현물선납액(선납신청액) (B1)	(1,072,341,000 원)
현금보상액 (C=A-B1)	(127,659,000 원)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 (추가 1주택 신청시)	(m²)
※ 보상금 총액, 현물선납가능액 등은 개인별 종전자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신청규모 기준으로 작성하되, 1순위가 아닌 2·3순위 신청규모가 선정될 경우 새롭게 명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동신청시에는 각 공동소유자의 금액을 합한 현물선납 명세와 신청인 각각의 현물선납 명세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선납액(B1) : 현물선납가능액 중 실제 선납하는 금액 으로, 지급을 유보하는 금액 1) 현물선납가능액 ≤ 우선분양가 합계인 경우 : 현물선납가능액 전액을 선납 2) 현물선납가능액 > 우선분양가 합계인 경우 : 2-1) 동일 지번의 토지, 지장물을 보유한 경우 : 물건별 현물선납액은 현물선납 비율만큼 안분 2-2) 서로 다른 지번의 토지나 지장물을 보유한 경우 :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물건별 현물선납액은 현물선납 비율만큼 안분하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양식4)물건별 현물 선납 명세를 작성하여 물건별 현물선납액을 작성	
< 유 의 사 항 >	
※ 주택 현물보상을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추후 '상가' 현물보상 신청시 현물선납 가능금액에서 '주택' 현물선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입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현물보상 대상자 선정취소 및 현물보상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작성 전 반드시 보상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물보상 신청 및 현물보상계약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은 추정가격 으로서, 추후 지반조사 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상계약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본인은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현물보상 받을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위 신청내역과 같이 현물로 보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신 청 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홍길순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귀하	

(양식2) 주택외 현물보상 신청(작성예시) 1/2면

		접수번호			
현물보상 신청서(주택 외)					
구분	☒ 단독신청 ☐ 공동신청(공동소유자) ☐ 공동신청(동일세대) ※ 세대원이 별개의 물건 소유할 경우 동일세대에 체크, 세대원이 동일물건 공동소유시 공동소유자에 체크 ※ 배우자와 미혼인 19세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신청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1.01	
	주소·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번지 (☎: 010-1234-5678)			
공동 소유자 /세대원 (공동 신청시 작성)	순번	성명	생년월일	지분	연락처
	1 (대표자)				
	2				
	3				
※ 공동신청인 각각의 ①현물선납명세 ②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4인이상 공동신청시 (양식3) 공동신청자 명단 별도 작성 ※ 공동소유자 전원이 신청서 서명 및 현물·현금청산 동의를 해야만 현물보상 대상자로 확정되며, 현금청산자 먼저 협의계약 이후 현물보상 계약가능					
주택 현물보상 선정여부		O / X		선정유형	(84 형)
주택 현물선납금액		(1,072,341,000 원)		주택 외 선납가능금액	(927,659,000 원)
신청 명세	구분	신청호수		공급순위	
	주택외 (근린생활시설)	-호		2순위	
※ 상가는 신청 대상자만 미리 선정후 추후 분양 공고시 호수는 선택 예정임					
비주택 공급 순위	·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로서 현물선납액이 96,762,000원 이상인 자 ·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현물선납액이 96,762,000원 이상인 자 ·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로서 현물선납액이 96,762,000원에 미달되나 주택을 현물보상받지 않은 자 ·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현물선납액이 96,762,000원에 미달되나 주택을 현물보상받지 않은 자 · 제5순위 :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받지 않은 자로서 현물선납액이 96,762,000원 이상인 자 · 제6순위 :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은 자로서 현물선납액이 96,762,000원 이상인 자 * 현물선납액 : 주택으로 현물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외한 금액				

(양식2) 주택외 현물보상 신청(작성예시) 2/2면

현물 선납 명세(비주택)						
보상금 총액 (A)		(2,000,000,000 원)				
주택 현물선납금액 (B1)		(1,072,341,000 원)				
비주택 현물선납금액 (B2)		(96,762,000 원)				
현금보상액 (C=A-B1-B2)		(830,897,000 원)				
구분	소재지/지번	보상물건	선납가능금액	①주택선납금액	② 비주택선납 가능금액	③ 비주택선납 신청금액
1	신길동 1-1	주택	1,000,000,000	1,000,000,000	0	0
2	신길동 1-2	상가	1,000,000,000	72,341,000	927,659,000	96,762,000
3						
4						
5						
계						
※ 보유물건은 현물선납 가능한 물건만 작성(‘종전자산 안내문’에서 ‘현금’으로 구분된 물건은 작성X) ※ 보유물건 중 동일지번에 있는 ‘기타지장물’은 ‘기타지장물 등’으로 합계하여 작성 ※ 신청한 비주택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선납 명세는 새롭게 작성할 수 있음 ①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는 경우 주택 현물보상 신청한 금액을 말함 ② 비주택 선납가능한 보상금액으로 주택선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③ 비주택 선납가능한 보상금액 중 실제 선납하는 금액으로, 지급을 유보하는 금액을 말함 1) 우선분양가 합계 ≥ 현물선납 가능액인 경우 : 물건별 선납가능금액 전액을 선납 2) 우선분양가 합계 < 현물선납 가능액인 경우 : 2-1) 동일지번의 토지, 지장물을 보유한 경우 : 선납신청 금액은 현물선납 비율만큼 안분해서 작성 2-2) 서로 다른 지번의 토지, 지장물을 양도하는 경우 :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신청액 작성 < 유 의 사 항 >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최종 설계안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최종 설계안 확정 시 동·층 및 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입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현물보상 대상자 선정취소 및 현물보상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작성 전 반드시 보상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물보상 신청 및 현물보상계약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은 추정가격 으로서, 추후 지반조사 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상계약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본인은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현물보상 받을 건축물의 분양 가격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위 신청내역과 같이 현물로 보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신 청 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귀하						

(양식3) 공동신청자 명단(4인이상 신청시) - (작성예시)

						접수번호	
현물보상 공동신청자 명단							
구분	■ 공동신청(공동소유자) □ 공동신청(동일세대) ※ 세대원이 별개의 물건 소유할 경우 동일세대에 체크, 세대원이 동일물건 공동소유시 공동소유자에 체크 ※ 배우자와 미혼인 19세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신청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1.01		
	주소·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번지 (☎: 010-1234-5678)					
공동 소유자/ 세대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지분	연락처	(서명 또는 인)	
	1 (대표자)	홍길동	1900.01.01	1/2	010-1234-5678		
	2	홍길순	1900.01.02	1/2	010-5678-1234		
	3						
	4						
	5						
	6						
	7						
	8						
	9						
	10						
※ 공동신청인 각각의 ①현물선납명세 ②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양식4) 물건별 현물선납 명세(서로 다른 지번 물건 보유시) - (작성예시)

						접수번호	
물건별 현물선납 명세							
현물선납가능액				(1,200,000,000 원)			
현물선납액(선납신청액)				(① 800,000,000 원)			
현금보상액				(400,000,000 원)			
구분	소재지/지번	보상물건	현물선납 가능액	현물선납액	현금보상액		
1	신길동 1-1	토지	②400,000,000	③400,000,000			
2	신길동 1-2	소계	④800,000,000	⑤400,000,000	400,000,000		
2-1		토지	⑥600,000,000	LH작성			
2-2		가옥	⑦100,000,000				
2-3		기타지장물 등	⑧100,000,000				
① 전체 현물선납액을 기입(①=③+⑤) ② 1-1번지 토지의 현물선납가능액(우편발송된 개별통지문 참조) ③ 1-1번지의 ②현물선납가능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만큼 ③현물선납액 작성 ④ 1-2번지의 물건 전체에 대해 현물선납가능액을 기입(⑥+⑦+⑧) (개별통지문 참조) ⑤ 1-2번지의 ④현물선납가능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만큼 ⑤현물선납액 작성 ※ LH작성 부분 : ⑤/④의 비율만큼 LH가 1-2번지 내 물건별 현물선납액 및 현금보상액 작성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참조)							
※ 서로 다른 지번의 필지를 보유하며, 필지별 현물선납액을 별도로 신청원하는 경우에만 작성 ※ 물건별 현물선납가능액은 주민 개별 통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로 다른 지번의 물건에 대해 총 현물선납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배부하여 기입하고, 동일지번 내 토지와 지장물(예: 1-2번지의 토지와 가옥, 기타지장물)이 있을 경우 현물선 납액과 현금보상액은 해당 번지에 배부한 금액의 현물선납비율만큼 LH가 작성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신 청 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귀하							

(양식5) 위임장(작성예시)

위임장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물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임인 (계약자)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연 락 처 : (주택) 02-1234-5678 (핸드폰) 010-1234-5678
- 성 명 : 홍길동 (인감 인)

□ 수임인 (대리인)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연 락 처 : (주택) 02-1234-8765 (핸드폰) 010-1234-8765
- 성 명 : 홍길순 (인감 인)

※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귀하

(양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작성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현물보상 신청자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된 정보는 해당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홍길동	60.01.01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홍길순	60.01.02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인적 사항	-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성명, 주소(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 인감도장 인영 및 서명 정보 - 주택소유(이력)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현물보상주택의 보상신청자(1호에 기재된 사람 포함) 주택소유여부 조회 등 자격심사 및 현물보상 접수 및 명단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현물보상 정책자료 활용	사업완료 후 6개월		
부동산 물건 정보	-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소유권 및 권리관계 정보	- 전·현 소유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유권 변경일 및 변경 사유 -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 여부, 채권액 및 채무자 인적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물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선택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국가/지역, 체류자격 및 기간, 동거 가족 사항 -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 사업자등록사항, 병역 사항 - 수임인(대리인) 주소, 연락처, 성명	동일세대 확인 현물보상 순위 및 대상자 확인 대리인 신분 확인	현물보상신청접수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현물보상 신청자격 확인 및 관련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현물보상 신청이 제한되거나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택]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현물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	☒		
		미동의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현물보상주택의 보상신청자(1호에 기재된 사람 포함) 주택소유여부 조회 등 자격심사 및 현물보상 접수 및 명단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현물보상 정책자료 활용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사업 종료 후 6개월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양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작성예시)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이주비 대출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완료 후 6개월
이주비대출 금융기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대출보증 발급	성명, 현물선납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물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주비대출 보증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공사에서 제공하는 우편물을 안내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26. 7. 27.

신 청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귀하

보증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보증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와의 (보증)채무약정, 채권관리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개인인 약정인,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증)채무약정 등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보증)채무약정 등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보증 발급 및 보증료 납부(환불) 안내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공공정보, 신용등급, 신용평점정보,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 본인 부동산현황, 직장·고용·급여(소득)정보,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등), 출입국기록정보(여권정보, 출입국일자, 출국목적, 행선국(출국지역) 등), 재외국민등록정보(체류국가, 주소지, 연락처, 등록일자 등)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재산권, 골프회원권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증상담 신청시까지 또는 상담이후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약정 등 거래관계 종료시점까지(보증 및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등)
제공·조회의 목적	법인의 (보증)채무약정에 따른 대표자, 경영실권자, 과점주주 등의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판단, 신용 관련 통계모형 개발 및 분석, 신용도 판단, 기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업무 등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조회 하는 사항] ☐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공공정보, 신용등급, 신용평점정보,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조회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증상담 신청시까지 또는 상담이후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약정 등 거래관계 종료시점까지(보증 및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제공·조회됩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평가 효력과 법인의 (보증)채무약정에 관계된 동의자 개인의 (보증채무)약정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유효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하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한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고객관리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본 동의서는 본인이 관계자 (대표자, 경영실권자 등)인 다른 회사가 귀 공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내 용	동 의 자		
수집·이용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인	성명 홍길동 (서명)
제공·조회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 등록 번호 000000-00000000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현물보상 대상 건축물 세부내역**

1. 조감도



2. 현물보상(주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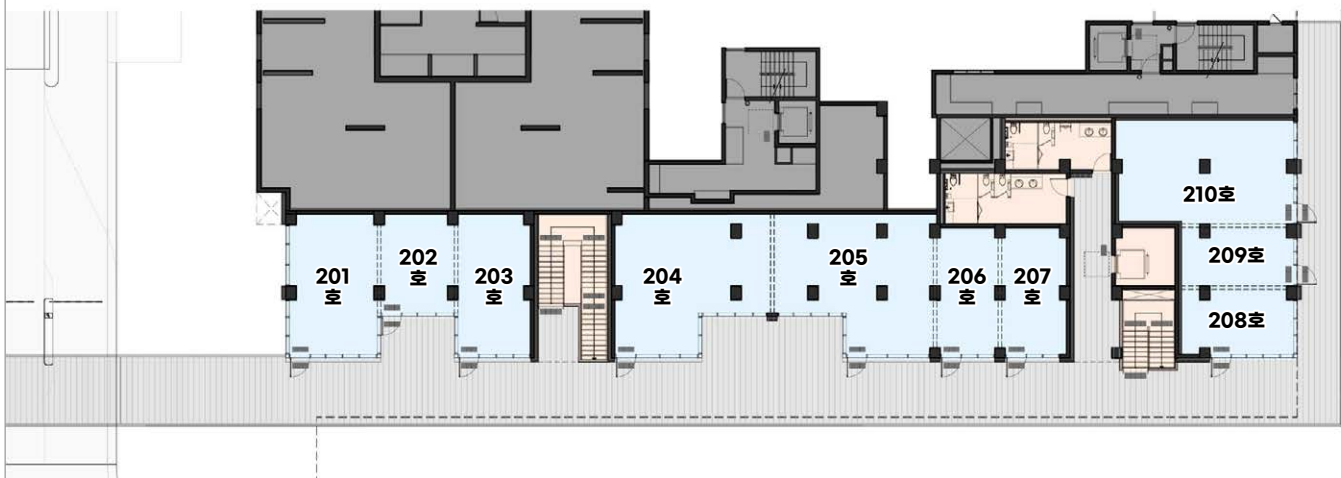




3. 현물보상(주택 외 건축물) 평면도



근린생활시설 (101동) - 1층



근린생활시설 (101동) - 2층



근린생활시설 (111동 B1F)



근린생활시설 (111동 B2F)

